

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**응급실 운영 중단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재개 관련 안내**

1. 감염병전담병원·거점전담병원 지정 등의 사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 중인 응급의료기관의 **응급실 운영재개* 요건** 관련 안내드립니다.

* 코로나19 환자 전담 응급실 등을 포함

2. (시설·인력·장비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**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,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**하여야 하며,

-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5의2], [별표6], [별표7], [별표8] 종별 지정기준에 관하여 '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(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-5757, 2020.12.30.)'에 따라 **탄력적 운영을 허용**한 바, 이에 따라 종별 허가권자에게 사전 승인·보고를 거쳐야 합니다.

<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탄력적 운영 기준 >

<p>현행</p>	<p>○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시설·인력·장비의 탄력적 운영(변경)하고자 하는 경우, 종별 허가권자*에게 사전 보고</p> <p>○ 단 (중추)응급환자진료구역의 시설·인력을 탄력적 운영(변경) 시 종별 허가권자*에게 사전 승인</p> <p>*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거쳐 보건복지부 사전 보고 또는 사전 승인 요청</p> <hr/> <p>○ (인정기준) - 사전 보고 (인정) 탄력운영기간 시작 전 또는 기간 중 보고 시 ▶ (불인정) 탄력운영기간 종료 후 보고 시</p> <p>- 사전 승인 (인정) 탄력운영기간 시작 전 승인 신청* 시 ▶ (불인정) 탄력운영기간 시작 후 (기간 중 또는 종료 후) 승인 신청 시</p> <p>* 지정권자의 승인이 지연되더라도 검토 결과 승인의 경우, 기간 시작 전 신청 시 인정. 단, 검토 결과 불승인인 경우, 공문 시행일 부터 탄력 운영 불가</p>
<p>추가</p>	<p>○ 신정지 환자의 신폐수생술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소생실 및 처치실은 탄력 운영 허용대상에서 제외</p> <p>○ 탄력운영기간의 종료일자를 '22.4.30.(토) 전으로 명시하여 신청</p> <p>○ * 응급실 처치·회복·허리·장비에 대한 탄력운영 허용하던 것을 단계적 위상복귀 검토 중</p> <p>○ 코호트 격리구역 설치로 인한 탄력 운영 요청은 사전 또는 사후 보고 가능</p>

- 단,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필수1. 인력에서 정한 종별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상주 기준 및 전담 기준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해당 기준을 미충족할 시,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필수기준 미충족으로 적용합니다.

3. (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

기관의 장애에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바, **응급의료기관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(NEDIS)에 응급진료 정보를 전송하여야 합니다.**

< 응급실 운영재개 요건 요약 >

① 시설, 인력 및 장비 지정기준을 충족한 24시간 응급환자 진료
② 필수 인력 상주 및 전담기준을 충족
③ 국가응급진료정보망(NEDIS) 응급진료 정보 전송

4.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기관(현재 운영 중단 중인 기관 포함)에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향후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집 1부.
2.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 1부.
3. 코로나-19 관련 응급의료기관 자원 탄력적 운영 요청 양식 1부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부산광역시(보건위생과장), 대구광역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인천광역시(보건의료정책과장), 광주광역시(감염병관리과장), 대전광역시(감염병관리과장), 울산광역시(식의약안전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보건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강원도지사(공공의료과장), 충청북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 전라남도지사(식의약과장), 경상북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경상남도지사(식의약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건강위생과장)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국립중앙의료원장, 대한응급의학회, 대한소아응급의학회

행정사무관 **이지연** 응급의료과장 전결 03/18
정성훈

협조자

시행 응급의료과-1385 (2022.03.18.) 접수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-40 (2022.03.21.)
8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응급의료과 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 044-202-2557 /전송 044-202-2557 / elaine66@korea.kr / 비공개